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4. 9.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8. 16.(금)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24. 8. 19.(월)
 -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4. 9. 2.(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4. 9. 2.(월)
- 다. 상정일자 :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4. 9. 3.)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사유 【제안설명자: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 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공공 게시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20백만원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지원받음
- 나. 이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전자게시대 설치를 위해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원금 120백만원을 활용, 폐기물 없는 광고매체인 LED 전자게시대 1기를 추가 설치하여 불법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관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홍보기회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나. 기타수입으로 편성된 현재 그외수입 26백만원에 지원금 120백만원을 증

액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된 현재 시설비 40백만원에 지원금 120백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검토보고(전문위원 권하나)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4년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¹⁾은 광고물 정비 등의 간판개선사업 및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업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와 불법 옥외광고물에 부과되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옥외광고센터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제2항²⁾ 단서조항에 따르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정책사업인 ‘성숙한 옥외광고 문화조성’은 당초 지출액(3억 3,060만 원)보다 36.29%,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지출 계획하려는 것으로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됨.
- 제출된 변경(안)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공공 게시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³⁾’에 선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인해 추가 수입 및 지출이 발생하여,

1) 설치년도 : 2009년

2)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3) 공공 게시시설 확충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도시미관·보행안전·자원순환을 위해 추진한다. 분야별로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현수막 지정 게시대 ▲공공전자 게시대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현수

2024년도 기금을 기정예산 15억 636만 9천 원에서 1억 2천만 원 증액된 16억 2,636만 9천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수입 1억 2천만 원이 증가한 사유는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 공공 게시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을 주관하면서 1억 2천만 원을 교부하였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지출 계획에 ‘공공 전자게시대 확충 사업’을 신설하여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여 당초 15억 636만 9천 원에서 16억 2,636만 9천 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음.
- 또한, LED 전자게시대를 추가 설치하여 적법한 옥외광고물을 게시할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폐현수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관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홍보 기회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 운용계획안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다만, 불법 광고물 감소를 위해 적법한 광고물 게시를 위한 기반(인프라) 확충도 필요하지만,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게시시설 신설과 함께 옥외광고물 관리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막 제작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해 전국 시군구에 지원한다.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 타: 없 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5.7.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25.)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4.25)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9.4.25)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9.4.25)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9.4.25)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9.4.25)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더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개정 2019.4.25)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9.4.25)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4.25)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2019.4.25)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